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 및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 요청〉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790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	1
III. 검토의견	2
1.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 및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 요청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소년원학교 운영 현황	3
다. 검토의견	8
라. 관계기관 의견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득구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11. 22.
3. 회 부 일 : 2024.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원학교에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소년원학교는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과 전문성 있는 교원의 부족 등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III. 검토의견

1.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 및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 요청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등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 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생략) <u><신 설></u>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③ <u>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나. 소년원학교 운영 현황

- 소년원은 「소년법」에 따라 위탁·송치된 소년 등을 수용하고 교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기관으로(제2조제1항), 「소년법」상의 임시처분이나 보호처분 등에 따라 위탁·송치된 소년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유치된 소년 등을 수용 대상으로 함(제1조의2).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된 소년을 말한다.
4.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을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음(제28조).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29조).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 소년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안양, 춘천, 제주 등 총 10개 소년원이 있으며, 이 중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는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등 총 4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음.

< 소년원학교 설치 현황(2024) >

지역	기 관	개 교	지역	기 관	개 교
서울	고봉중·고등학교	1990	전주	송천중·고등학교	1990
대구	읍내중·고등학교	1990(2021)	안양	정심여자중·고등학교	1990(2019)

주: 괄호 안은 재개교 연도

-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법무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음(제30조).

제30조(교원 등) ①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현재 4개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 담당으로 채용·배치된 직원은 총 16명임. 이 중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되어 있고, 대구소년원의 교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음.

< 소년원학교 교원 현황(2024) >

지역	기 관	교원수	지역	기 관	교원수
서울	고봉중·고등학교	5명 (전문경력관)	전주	송천중·고등학교	4명 (전문경력관)
대구	읍내중·고등학교	3명 (공무직)	안양	정심여자중·고등학교	4명 (전문경력관)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해당하여 동법 제23조²⁾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음.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교육계획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교육계획)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 실시는 단순히 대상자의 학업 성취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예방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³⁾ 대상 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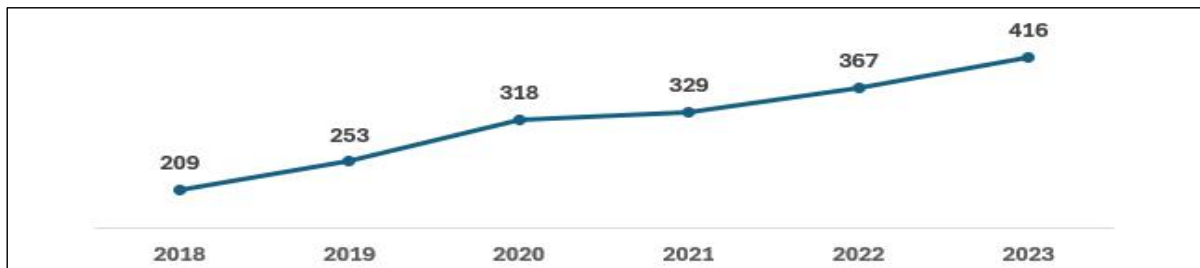
3) M.W. Lipsey, J.C. Howell, M.R. Kelly, G. Chapman, and D. Carve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Justice Programs, Center for Juvenile Justice Reform at Georgetown

고 해당 소년을 사회화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에 따라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년원학교에서 교과교육을 이수하는 소년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8-2023년 동안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 수료 인원은 2018년 209명에서 2023년 416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음.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수료 인원(2018-2023) >

(단위: 명)



University (2010) 참조, 강태경·유진,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13에서 재인용.

다. 검토의견

- 안 제29조는 소년원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소년원학교 교원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 및 교육과정 체계화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에 기여하고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소년원학교의 특수성과 가변적인 수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소년원학교는 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2024년 기준 각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3~5명으로 교과과목별 전담교사가 확보되지 않아 다양한 교과교육을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게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⁴⁾
 - 안 제29조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년원학교의

4) 강태경·유진,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46-47.

교육과정 체계화를 통한 교과교육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3조⁵⁾ 상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각 지방 교육감에 있고 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에 있음을 고려하여 안 제29조의 지원요청기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 제30조제4항⁶⁾은 소년원학교장은 필요 시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 제30조제4항의 “상호 교류협력”의 범위에 교원 배치 등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으로 박준태의원안(2024. 9. 25. 발의, 의안번호 제4265호)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로, 이와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원 등) ④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안(강득구의원안)·박준태의원안 간 비교 >

현행	개정안(강득구의원안) (의안번호 제5790호)	박준태의원안 (의안번호 제4265호)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29조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원행정처**는 품행교정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소년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부와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고, 다만 소년원 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사 파견을 위한 교육감의 협조도 필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중등교육과정 연구·개발·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이므로 교육과정 연구·개발 관련 지원요청기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교원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인 일반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소년원학교에 배치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사의 파견”으로 자구를 수정하며, 현행법령 상으로도 파견이나 교사간 교환수업 등 협력이 가능하므로 교육부장관 등에게 별도의 노력 의무를 두는 것이 과도하다고 여겨져 안 제29조제3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관련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과정 연구·개발”이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년원 학교를 지원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역할을 규정 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관계기관 수정안 간 비교 >

개정안	법무부 수정안	교육부 수정안	국가교육위 수정안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교사 파견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장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u><삭 제></u>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052